

2020년 5월 13일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지성훈 과장(044-201-1831), 김종원 서기관(2985) / 제공일: 5월 12일(총 3매)
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정충섭 과장(063-238-1040), 채익석 지도관(1053)
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방제과 현익화 과장(054-912-0670), 이흥식 연구관(0655)
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안종락 과장(054-912-0150), 장준연 연구관(0165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사과·배 묘목 단계부터 과수화상병 체계적 관리 추진

《주요내용》

- ◆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수화상병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사과·배 묘목 재배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
 -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과·배 묘목 재배지에 대해 매년 2~4회 정밀예찰 실시 및 예방약제 1~3회 살포
 - 사과·배 묘목 생산·판매지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합동 일제 조사·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불량 묘목 유통을 적극 차단
 - 종자업체의 포장·종자검사 기준에 과수화상병 등 발생 시 관계 기관에 신고·처리토록 「종자관리요강」(농식품부 고시) 개정 추진

□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농식품부)는 과수화상병 역학조사 결과, 묘목을 통한 중·원거리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과·배 묘목 재배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.

- 먼저, 전국의 사과·배 묘목 재배지를 매년 실시하는 과수원 정기예찰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여, 농진청(주관)·산림청·농림축산검역본부·지자체가 합동으로 2~4회* 정밀 예찰하고,

* 기존 발생 과수원 반경 2km 이내와 발생 과수원의 농장주가 경작하는 다른 과수원 등 역학 관련 과수원은 4회, 기타 지역은 2~3회 실시

- 이들 정밀 예찰대상 묘목 재배지에 대해서는 국가(지자체)가 병해충 방제비를 지원하여 과수화상병 예방·방제기준에 따라 3~5월 중 1~3회(개화전, 개화기 2회) 약제를 살포하게 된다.
- 사과·배 묘목 생산·판매 업체(농가)에 대해서도 종자원(주관)·농림축산검역본부·지자체가 합동으로 품질표시사항 준수 실태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불량 묘목의 유통을 적극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.
- 농식품부는 고품질 묘목 생산·유통 체계 정착을 위해서는 과수화상병 등 금지병해충 발생 시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,
 - 올해 안에 「종자관리요강」(농식품부 고시)를 개정하여 '종자업체의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 기준'을 보완할 계획이며,
 - 묘목 생산·판매자, 과수재배 농가가 불법·불량 묘목을 판매·구입하지 않도록 교육·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.
-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,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'19.8월부터 병해충 예찰·방제대책본부를 운영하며, 과수화상병 현장 대응 상황, 발생요인 분석 등을 통해 확산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.
 -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등에 대한 집중예찰, 전국을 발생지(11개 시·군), 완충지(52개 시·군), 미발생지(기타 시·군)로 설정하고 차등 관리하며, 발생지와 인접한 9개 시·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예방약제 살포를 확대(1 → 3회)하는 등 중점관리 중이다.

- 지자체(40개소)에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·방제단을 설치하고 전문인력(80명 목표)을 확보하여 현장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.
- 또한, 농업인 전정교육(1월), 새해실용교육(12~1월),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한 카드뉴스 제작·SMS 발송 등으로 농가가 현장 실천 매뉴얼에 따른 시기별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.
- 농식품부 지성훈 식량산업과장은 사과·배 재배 농가들에게 과수화상병의 재배관리 및 현장 실천 매뉴얼을 충실히 실행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,
 -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2020년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.